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 및 과태료(법 제23조 및 제24조)

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등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2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법률 제79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회복”을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1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안전 전문가”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 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의 역할체계를 재정립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명시(법 제3조)

시·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나. 시공자의 선정(법 제11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하

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국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2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대통령령 제194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중 “고가특수의료장비”를 각각 “의료장비”로 하며, 동표 제2호 본문중 “산정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입원기간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